

문서번호	도시제조업지원전략수립TF팀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73)호

담당	팀장	실장	대표이사
우정현	김정훈	문구선	12/27 주형철
협 조			
	팀장	차기석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동산 무상양도 계획(안)**

**도시제조업지원전략수립TF팀**

## 주요사항 요약보고

### 가. 부동산 매입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7-34 (아차산로 17길 9)
- 규 모 : 토지 면적 559㎡(약 169평) / 건축물 연면적 599.6㎡ (약 182평)
- 단 가 : 총 일금 6,007,754,366원
  - 토 지 : 5,922,456,340원
  - 건 물 : 85,298,026원(부가세 포함)
- 기 타 : 준공업지역 (건폐율 60% 이내, 용적율 400% 이내)

### 나. 지난 경위

- 1) 부동산 매입 및 등기 완료 : 2017.06.18.
-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협약 안내 : 2017.11.22.
  - 중기부, 서울시, sba 삼자간 협약
- 3)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개최 : 2017.11.29.

####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의 협의 및 예산심의 의결사항

- ▶ 현재 시설구축 및 운영관련 추진방식은 도시형소공인지원조례에서 시장의 사무로 규정한 것을 sba의 고유사무로 추진한 것으로 부적절(의회 지적)
- ▶ 건물증축예산 75억원은 서울시에서 2018년 추경을 추진하여 실행(공사 발주 등 서울시에서 일체 관장)
- ▶ 구매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중기부 허가를 득해 서울시에 무상양도 실시

- 4)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업무협조(서울시 공문) : 2017.11.29.
  - 시의회 지적에 따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지 **소유권 및 활용계획** 제출 요구

### 다. 향후 일정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기부채납 가능 여부) : 2018.1월
- 절차에 의한 기부채납 진행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동산 소유권 및 활용계획(안)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의 협의 및 의결사항에 따라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동산 소유권을 서울시로 무상이전 추진

## I 추진 개요

### □ 추진 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중소벤처기업부, 2016.09.12.)
- 전국 최초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집적지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2016.12.21.)
- 2017년도 도시제조업지원센터 사업 계획(안)(대표이사 방침 제44호, 2017.02.20.)
- 2017년도 소공인특화지원광역센터 운영계획(안) 수립(도시제조업지원전략수립IF팀-13, 2017.08.22.)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업무협조 공문(서울시 경제정책과-14141, 2017.11.29.)

### □ 추진 경과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업무협조(서울시 공문) : 2017.12.18.
  - 시의회 지적에 따른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부지 **소유권 및 활용계획** 제출 요구
-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의 협의 사항 **【첨부1】** : 2017.11.29.
  - 협의자: 서울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본부장, 경제정책과장, 도시제조업팀장), 서울산업진흥원(기획실장, 기획팀장)

가) 현재 시설구축 및 운영관련 추진방식은 도시형소공인지원조례에서 시장의 사무로 규정한 것을 sba의 고유사무로 추진한 것으로 부적절(의회 지적)

나) 건물증축예산 75억원은 서울시에서 2018년 추경을 추진하여 실행(공사발주 등 서울시에서 일체 관장)

- 2018년 sba출연금 예산안에 편성된 43억원을 감액함
- 2017년 예산 중 미집행액은 예비비로 편성한 13억원은 불용처리하여 잉여금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미집행(약 16억원)은 명시이월하여 2018년 집행함
- 명시이월예산으로 설계 등 사업시행

다) 구매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허가를 득해 서울시에 무상양도 실시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협약 안내 : 2017.11.22.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삼자간 협약 **【첨부3】**

## II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인프라 개요

### □ 인프라 구축 배경

-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는 28만 명으로 지역 내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은 6.0%(2015년)
- 전문 기술인·단순 노무인력 등 다양한 계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도시 성장기회 제공의 중요성 부각
-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

### □ 인프라 구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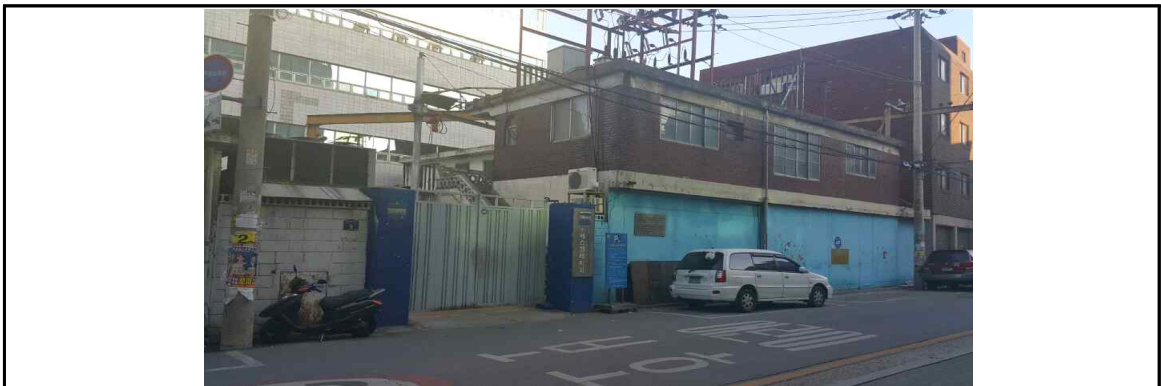
- 전국 최초 소공인 직접지구(문래기계금융속, 종로주얼리, 성수수제화) 선정으로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고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기반 조성
- 광역센터 신규 조성으로 전문성 확보, 산업 고도화, 협동화사업 지원

### □ 인프라(부동산) 매입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7-34 (아차산로 17길 9)
- 매입금액 : 총 일금 육억칠백칠십오만사천삼백육십육원정(W6,007,754,366)

구분	규모	금액
토지	559㎡(약 169평)	5,922,456,340
건물	599.6㎡ (약 182평)	85,298,026 (부가세 포함)
합계		6,007,754,366

- 기타 : 준공업지역 (건폐율 60% 이내, 용적율 400% 이내)
-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서울산업진흥원 명): 2017년 5월 31일



<외부전경>

### III 추진 계획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서울시로 **기부채납 형식 무상양도** 추진

- 재산가액 5억원 초과 재산은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필수(2018년 1월)

#### 서울시 기부채납 개요 **【첨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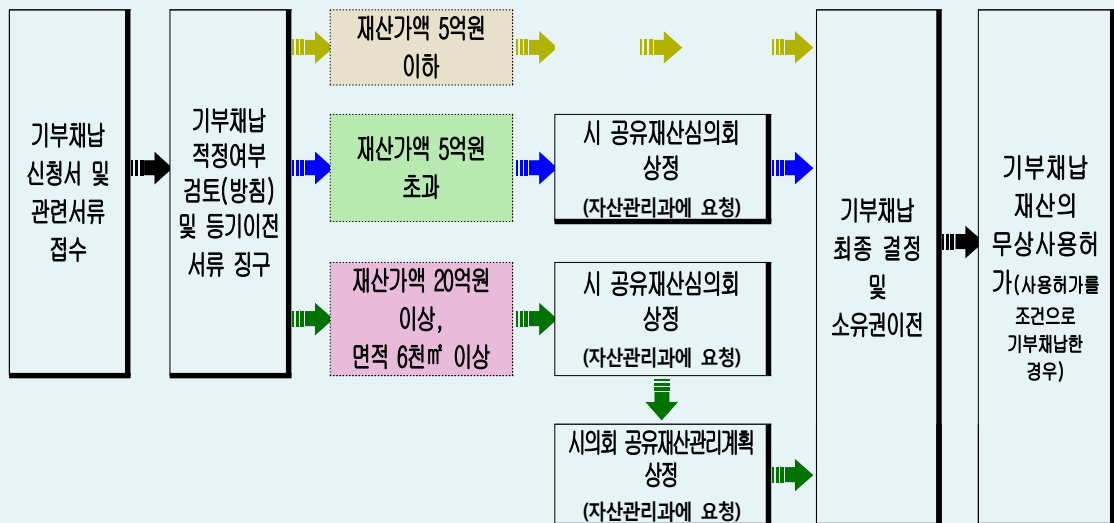
##### □ 정 의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 □ 대 상

○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

##### □ 업무처리절차



##### □ 관련공부

가. 기부서(기부채납신청서) 1부, 기부채납약정서 또는 이행각서 중 1부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건물신축 기부채납 시 계획서 및 설계도면)  
 라. 기부재산의 사용계획서(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제외) 등

#### □ 부동산 활용계획

○ 전국최초 소공인 집적지구 선정에 따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해왔지만,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심의 협의 사항중 서울시가 공사발주 등을 일체 관장함으로 변경되어 기부채납 **이후 활용계획 없음**

## IV 세부 추진 계획 및 일정

세부계획	일시	근거
① 부동산 기부채납 추진 의사 공문 발송	12월 말	
② 서울시 관계부서 보고 및 사전 협의 (법정 협의사항)	2018년 1월 내	<p>&lt;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gt; 제25조(지도·감독 등)</p> <p>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8조(지도·감독 등)</p> <p>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p>
③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	2018년 1월 25일 (목)	<p>○ 대상 : 기부채납 재산가액 5억원 초과인 경우</p> <p>- 기부채납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p>
④ 서울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2018년 2월 내	<p>○ 대상 : 기부채납 재산가액 20억원, 면적 6천㎡ 이상인 경우</p> <p>- 기부채납 받으려는 재산이 중요재산(2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6천㎡ 이상인 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p>
⑤ 서울산업진흥원 이사회 심의의결 상정	2018년 3월 내	<p>&lt;정관&gt;</p> <p>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p>
⑥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승인	2018년 4월 내	<p>&lt;정관&gt;</p> <p>제32조(재산의 관리)</p> <p>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⑦ 기부채납 최종 결정 및 소유권 등기 이전	2018년 5월 내	

- 첨 부: 1.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업무협조 1부
2. 2018 예산 심의시 결정된 사항 1부
3.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서 1부
4.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협약서 1부

5. 2017년도 소공인특화지원광역센터 운영계획(안) 1부.
6. 2017년도 도시제조업지원센터 조성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7. 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개정안). 끝.